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87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 김 윤 · 김한규 · 주철현

전용기 · 권향엽 · 홍기원

박민규 • 장종태 • 이재강

오세희 • 정진욱 • 김우영

고민정 • 박해철 • 황정아

임미애 • 이해식 • 유종오

모경종 • 강준현 • 전종덕

민병덕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을 "난임시술현황,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및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등)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	
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	
목·다목· <u>마목</u> 에 따른 의료기	<u>바목</u>
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	
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	<u>난임시술현황, 난임시</u>
<u>에 따른 임신·출산</u> 등에 대한	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및 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	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
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②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

	<u>례</u>
<u>5.</u> ~ <u>7.</u> (생 략)	<u>6.</u> ~ <u>8.</u> (현행 제5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